

1. 개정이유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882호, 2024. 1. 2. 공포, 2024. 7. 3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립수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·수집하도록 하고, 국립수목원 등을 국가희귀·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 21. ~ 5. 31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·수집·공표 등) ①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·수집(이하 “수목유전자원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목유전자원의 종류·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(GPS)을 이용한 위치정보
2. 수목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관리 등의 이력관리 정보
3.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립수목원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② 수목유전자원조사의 방법은 청문·자료·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.

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수목유전자원 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·수집·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의3(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(이하 “보전기관”이라 한다)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합하여 30종 이상을 보유할 것
2. 영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 2명 이상을 상근 전담인력으로 갖출 것
3.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

② 보전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2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서

③ 국립수목원장은 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④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.

⑤ 보전기관은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전·관리하고 있는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육조건을 유지

해야 하며,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희귀·특산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가회귀·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·열람일시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	---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대표자 성명	대표자 생년월일
	소재지	전화번호

회귀·특산 식물 명세	국명	학명	용도 및 목적
	(별지 가능)	(별지 가능)	(별지 가능)

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회귀·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수목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 2. 회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서 1부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소재지란에는 수목원이 있는 곳을 기재합니다.
- 용도 및 목적란에는 회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수목원에서 보전하는 용도 및 목적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현지확인 (필요시)	→	결 재	→	지정서 발급
--------	---	-----	---	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	---	--------

신청인

처 리 기 관 : 국립수목원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소 재 지:
3. 성 명(대표자):
4. 업무 범위:

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수목원장

직인

희귀 · 특산식물 관리대장

- ☐ 종명: 국명 (학명)
- ☐ 최초 취득(확보) 경위
- (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)
-
-
- ☐ 관리현황(증식, 재해 · 고사, 병충해, 반출 등 사안 발생 시 기술)

일자	구분	수량	세부내용	담당자
				(서명)
				(서명)
				(서명)
				(서명)
				(서명)
				(서명)
				(서명)

※ 작성방법

1. 구분란에 증식, 재해 · 고사, 병충해, 반출 등의 관리사항을 기술합니다.
2. 사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으로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수목유전자원의 현황 조사·수집·공표 등) ① 법 제 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·수집(이하 “수목유전자원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수목유전자원의 종류·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(GPS)을 이용한 위치정보</u> <u>2. 수목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관리 등의 이력관리 정보</u> <u>3.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립수목원장이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② 수목유전자원조사의 방법은 청문·자료·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.</u> <u>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수목유전자원 정보를 수집</u>

<신 설>

·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·수집·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의3(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(이하 “보전기관”이라 한다)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합하여 30종 이상을 보유할 것
2. 영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 2명 이상을 상근 전담인력으로 갖출 것
3.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

② 보전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

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
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2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
계획서

③ 국립수목원장은 보전기관을
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
서식의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
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
다.

④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
보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
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
이내에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
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
지정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반
납해야 한다.

⑤ 보전기관은 법 제13조의3제4
항에 따라 보전·관리하고 있는
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적
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육조
건을 유지해야 하며, 희귀식물
및 특산식물의 보전·관리에 관
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4서식의
희귀·특산식물 관리대장에 기
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

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보전기관의 지
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
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.